# 농기계임대

세부사업명	농기계임대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노후농기계대체	<b>예산</b> (백만원)	35,625					
사업목적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 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축진)						
지원자격 및 요건	<ul> <li>○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또는 증상 개소당 10억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50%)</li> <li>○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기계 구입비 100백만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50%)</li> <li>○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2억원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연구수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지원 2억원 (모수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지원 2억원)</li> </ul>	영 시군구 ( )%) 단화된 지자처 원(국고 50%, 임대사업소 편	여성친화형 농업    또는 논 타작물 지방비 50%)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한도	<ul> <li>○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800~1 사업비 차등지원)</li> <li>○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li> <li>○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농기계 임대사업소</li> <li>○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150~3 사업비 차등지원)</li> </ul>	개소당 70~ 개소당 200	·140백만원(평가 )백만원(사업비)					

<b>재원구성</b> (%)	국고	50	지방비	<b>i</b> 50	융자		자부디	람
	_						(딘	·위 : 백만원)
	-	구 분	<u>4</u> -	2017년	2018년	201	9년	2020년
		합 계		54,000	58,000	84	,000	71,250
		국 고		27,000	29,000	42	2,000	35,625
		지방비		27,000	29,000	42	2,000	35,625
	1 7171101	-11.11.01	소계	42,000	32,000	24	,000	24,000
	농기계임(   소 설치		국고	21,000	16,000	12	2,000	12,000
연도별			지방비	21,000	16,000	12	2,000	12,000
재정투입 현황		<u></u>	소계	6,000	6,000	6	5,000	6,000
<u> 25</u>	여성친   농기계	· .	국고	3,000	3,000	3	3,000	3,000
			지방비	3,000	3,000	3	3,000	3,000
		0171	소계	4,000	10,000	44	,000	33,250
	수산지 기계화		국고	2,000	5,000	22	2,000	16,625
		. —	지방비	2,000	5,000	22	2,000	16,625
		-1-u	소계	2,000	10,000	10	,000	8,000
	│ 노후농 │ 대체 제		국고	1,000	5,000	5	5,000	4,000
			지방비	1,000	5,000	5	5,000	4,000
담당기관		5	남당과	담당	·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		·	서기관 농기계		044	-201-1840		
<b>신청시기</b> 정기(전년도 10~11월)				사업시	행기관	지빙	상자치단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관련자료

## I 주요내용

### ①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 1. 사업대상자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 (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임대 가능
  -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3일 이상 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을 위해, 농업인이 잔가지 파쇄기 임대를 요구할 경우 우선 구입하여 임대하여야 함. 또한,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 으로 임대할 수 있음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 4. 지워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
  -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하여야 함
    -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농사로 농업기술포털, http://www.nongsaro.go.kr)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구축
  - 보관창고는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관리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24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800~1.600백만원/개소
  -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24,000백만원(국고 12,000백만원, 지방비 12,000백만원)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 \* 신규: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 분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 증설은 '19년부터 지원불가

### ② 여성친화형 농기계

####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여성농업인을 우대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단, 20만원 미만의 편이장비는 장기임대(1년)를 할 수 있음

####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여성친화형 농기계\*
  - \* 여성친화형 농기계(부착식 포함): 관리기(부속작업기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 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편이장비 구입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을 위해 둔부에 부착하는 농작업용편의의자\*, 휴대용자동전동가위
  - \* 농작업용편의의자: 국가공인기시험기관에서 농작업용 의자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착탈이 편리하고 이동시 의자가 둔부에 고정되는 "농작업용편의의자"로써, 특허청 장이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한 특허등록된 조달 청(벤처나라 등)제품

####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6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70~140백만원/개소
  -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③ 주산지 일관기계화

#### 1. 사업대상자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및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은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 · 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주산지에 상주하면서,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파종	트)파종기		
콩1	예취	콩예취기	10	
	탈곡	콩탈곡기		
₹0	파종	트)파종기	15	
콩2	예취+탈곡	콩콤바인	15	
7 7 n)	정식	동력정식기	(	
고구마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6	
フレット	파종	동력파종기	0	
감자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8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다르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0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	
75-47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6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 건경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5	

<sup>\*</sup>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 4. 지원자금의 용도

####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데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함.(예 : 콩 수확기 구입비는 95,000천원 이하이며, 나머지 95,000천원은 반드시 정식기나 파종기 등을 구입하여야 함)
  -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함
  - · 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166개소
- 사업단가:200백만원/개소
  -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33,250백만원(국고 16,625백만원, 지방비 16,625백만원)

### ④ 노후농기계 대체

####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지자체)
  - \* 예산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20년 지원대상 시·군·구는 '19년도 평가결과를 반영 하여 선정하며, '20년 평가결과는 '21년도 사업에 반영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 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4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150백만원~300백만원/개소
  - \* '20년도에 지원하는 시·군·구는 '19년도 지원받은 시·군·구를 제외하며,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9년도의 "C"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8,000백만원(국고 4,000백만원, 지방비 4,000백만원)

## Ⅱ /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21년도) 시·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대농업 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21년도) 시·군·구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 \* 사업신청시 시·도 및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 첨부 요망

####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

####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2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 사업신청시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임대농기계 수요 조사서 첨부 여부,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 '21년부터는 시·도 및 시·군·구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계획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 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이중, 부지 확보와 지자체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시·군·구는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100대 미만	~200	~300	~400	~500	500대 이상
정규직	1	2	3	4	5	6
계약직	1	3	5	6	7	8
계	2	5	8	10	12	14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 2명이 되어야 함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 (당년도 1월)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할 경우,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수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변경 승인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보관창고 확대 설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임대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계약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 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 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 하고, 보조금을 교부

####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관리주체(시 · 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서식 별도 통보]

####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10 년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 금지	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 6. 성과측정단계

-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자료 요구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만약,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음

## Ⅲ / 평가 및 환류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20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20. 2. 28.까지

○ 가내시 통보 : 2020. 9. 30.까지

####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20. 12.까지 제출
  - \* 사업신청시 시·도 및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 첨부 요망
- 기타사항은 '20년도와 동일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급장사					
NAI TH	■ 임대사업소 (신규, 분점, 증설)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구분	<ul><li>주산지일관기계화 ( )</li><li>여성친화형농기계 ( )</li></ul>	(백만원)			
	시설・장비		소요예신	는(백만원)	
사업내용	임대농기계 구입 : 종	<u>S</u>	대		
ा । । । ।	보관창고 설치 :		m²		
	관리장비 구입 : 총		대		
전담인력	명	3	검례	제정( ),	미제정( )
확보내용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저	]정여부	/W O( ),	· [/][ 6(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

###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

####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00.00~00.00(0일간)

○ 조사대상 : 농업인 000명\* (관내 농업인 0,000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응답농업인)

○ 조사방법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설문조사, 00행사 참여농업인, 새해농업인 교육 참석자 등 대상 설문조사

#### □ 수요조사 결과

순위	기종명	구입 희망 농업인	비 율 (%)	구입 계획 (대)	임대농 보유 대수 (대)	5기계 이 이용 농가수 (명)	연간 임대 일수	비고(사유)
1	땅속작물수확기(감자)	(명) 65	, ,	3	5	80	(일) 120	농가수요 증가로 추가구입 필요
2	농업용 굴삭기	57		2	-	-	_	
3	관리기	53		-	12	50	80	현보유 임대농기 계로 수요 충족
4	승용동력제초기	45		3	2	45	60	
소계		000						

- \* 농업인이 다수의 농기계에 대해 응답 할 수 있으므로 구입희망 농업인은 응답 농업인보다 많을 수 있음
- \* '연간임대일수'는 해당 기종의 직전년도 연간임대일수
- \*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서 작성

##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	별 임	대료				
/15 8	1 선덕번호	1	2	3	4	5	6	7	8	9	10	계

-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

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시장(군수) ○ ○ ○ (인)

임차인 주소:

전화번호:

소속 :  $\bigcirc \bigcirc$  작목반,  $\triangle \triangle$  농업법인 등

성명 : ○ ○ ○ (인)

###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천원)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 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면 됨.
  - 5년동안 총 1,800천원(360천원×5년=1,800)을 징수(구입가의 20%)하게 됨.
- 만약, 구입가가 90,000천원이라면 위 표의 구입가 9,000천원인 농기계의 연간 임대료에×10을 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가 90,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 3,600천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됨
- \* 구입가가 90,000천원인 농기계는 위표의 9,000천원의 10배이므로 연 임대료는 360천원×10=3,600천원이 되는 것임
- 구입가격이 1,500천원인 경우 1,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와 2,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 내용연수가 6년인 농기계의 경우, 1,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33천원이고, 2,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67천원이므로 1,5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50,000원[(33,000원+67,000원)/2=50,000원]임
  - \* 중간 가격은 비례법칙으로 계산하면 됨

##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 하여 기재(농작업 추진실적을 합산)	시·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4.10.	1,000평(3300㎡)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작업료 입금 통장 사본 등) 첨부

#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l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액(천원)	합계 코		<sup>7</sup> ㅂ]	시·도비		시・군비	
길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일
식 명	ਜ		न	격			
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 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ار ا	,						
요특징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액(천원) 일의자 식 명 동력기 능 보특징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예시 : 퇴 액(천원) 합계 액(천원) 년 월 식 명 동력기 경운기, 관리기 능 라투징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예시 : 퇴비살포 액(천원) 합계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예시 : 퇴비살포기 - 1)  학계 국 비  학(천원)  집일자 년 월 일 폐기  식 명 규	(예시 : 퇴비살포기 - 1)  막(천원)  합계 국비 시·도  막(천원)  나 월 일 폐기일자  식명 규 격  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 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능  보특징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예시 : 퇴비살포기 - 1)  액(천원)  합계 국비 시·도비  액(천원)  집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식 명 규 격  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 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등  요특징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예시 : 퇴비살포기 - 1)  (예시 : 퇴비살포기 - 1)  (예(천원))  합계 국비 시·도비 시  (의원원)  대한 원 일 폐기일자 년 월  식명 규 격  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 제조번호  등 등  보특징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1							